

오픈넷 저작권 상담 사례

윤흥기 오픈넷 연구원

* 아래 사례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비식별화를 위해 일부 사실을 변경하였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문내용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사례 1. 무료 폰트 사용으로 형사고소당한 비영리단체 직원에 대한 불송치 결정

한 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 무료 이용 조건으로 배포된 폰트 파일을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폰트 저작권자가 2022년 7월 형사고소를 한 사건이다. 오픈넷이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다.

2017년에 있었던 사회복지관 행사 중 폰트제작자가 배포한 무료 폰트 파일을 이용하여 문구가 작성된 파워포인트 화면이 띄워졌었다. 사회복지법인 직원이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사회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컴퓨터를 사용했고, 이 컴퓨터에는 위 무료 폰트 파일이 설치되어 있었다.

일반적인 경우 서체도안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폰트 파일만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폰트제작사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위 서체도안을 파워포인트에 이용할 때 서체도안을 촬영하거나 캡처하여 문구를 구현한 것이 아니라 해당 폰트 파일을 이용하여 문구를 구현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서체도안을 이용한 자는 폰트 파일을 이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자발적으로 언급할 이유가 없다.

또 이미 설치된 폰트 파일을 사용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폰트 파일을 복제(즉 설치)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불법이 아니다. 5년 전에 서체도안이 이용되었으므로, ① 어떤 직원이 서체도안을 이용하여 문구를 작성한 것인지 알기 어렵고, ② 직원을 특

정하더라도 어떤 컴퓨터로 작성한 것인지 알기 어려우며, ③ 직원 및 컴퓨터를 특정하더라도 직원이 해당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했는지 알 수 없고, ④ 직원 및 컴퓨터를 특정하고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하더라도 어떤 경로로 다운 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고, ⑤ 위 모든 것이 확정되더라도 피의자인 사회복지법인 자체는 위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물론 폰트 파일이 불법복제된 것이었다면 업무상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한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나, 해당 폰트 파일은 비영리 무료 이용 조건으로 배포된 것으로서 복제행위 자체는 불법일 여지가 없다. 또 위 모든 것에 대해서 폰트제작사가 입증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체도안 이용자는 자발적으로 인정할 이유가 없다.

결국 피의자가 폰트 저작권자의 폰트 파일을 복제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증거가 없어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법인이 알면서 폰트 파일을 다운받아 설치하여 그 폰트 파일로 해당 문구를 구현했다고 하더라도 비영리 무료 이용 조건으로 폰트 파일이 배포되었기 때문에 그 폰트 파일의 설치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하여 조건을 위반한 것은 민사상 계약위반에 해당할 뿐이어서 애시당초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이다.

사례 2. 비영리 종교법인이 발간한 선교지에 무료 폰트 파일의 서체도안이 이용된 경우

비영리 종교법인이 2019년에 발간한 선교지에 무료 이용 조건으로 배포된 폰트의 서체도안을 이용했다며 2023년 6월, 폰트 파일 제작자가 법률사무소를 통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안이다.

저작권자 회사 측은 증거자료로 종교법인 홍보 영상 중 서체도안이 사용된 선교지가 소개된 화면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회사 측은 합의 조건으로 400여만원을 지불하고 폰트 패키지 상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다가 110만원을 내고 40개 폰트 1년 사용 상품을 구입할 것을 제시했다.

4년 전에 제작된 책자이기 때문에 누가 당시 서체도안이 사용된 부분의 제작을 맡았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일반적인 경우 서체도안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폰트 파일만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폰트제작사가 권리침해를 주장하려면 위 서체도안을 선교지에 이용할 때 서체도안을 촬영하거나 캡처하여 문구를 구현한 것이 아니라 해당 폰트 파일을 이용하여 문구를 구현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서체도안을 이용한 자는 해당 폰트 파일을 이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자발적으로 언급할 이유가 없다.

또 이미 설치(복제)된 폰트 파일을 사용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폰트 파일을 복제(즉 설치)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불법이 아니다. ① 문제되는 선교지가 외부업체에서 제작한 것이라면 제작을 의뢰한 종교법인/담당자는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만을 이용한 것이므로 (이 역시 종교법인이 직접 선교지를 복사한 경우에만 그러하다)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누가 폰트 파일을 어떻게 어디서 다운받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도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가지므로 서체도안 이용자는 아무런 사실을 인정할 이유가 없고, ② 폰트 파일을 종교법인이 직접 설치했다고 할지라도 무료 폰트 사용에 관한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하고 저작권 침해는 아니어서 형사책임은 발생하지 않고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만이 문제될 것이라는 점, ③ 실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위 사실들이 모두 입증된다 하더라도 저작권자 회사 측에서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실 및 피해액을 증명해야 하며 특히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

오픈넷의 조언에 따라 종교법인이 답변을 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현재 폰트제작사 측에서 더 이상 별다른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유사사례 1

2023년 11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에 폰트 저작권자 회사가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한 유사사례가 있었다.

2022년 초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 안내글에 폰트

저작권자 회사가 무료 배포했던 폰트파일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저작권자 회사는 합의 조건으로 150만원 상당의 폰트 사용 라이선스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시했다.

위의 종교법인 사례와 비슷하게 조연을 하여 답변을 하였고 현재 저작권자 회사 측에서 별다른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유사사례 2

2023년 8월, 폰트 저작권자 회사가 한 교회에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례이다.

교회 청년부가 행사 기록용으로 만든 영상에 무료 배포되었던 폰트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폰트 저작권자 회사가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합의 조건으로 220만원 상당의 폰트 사용 라이선스 상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한 사안이다.

위의 종교법인 사례와 비슷하게 조연을 하여 답변을 하였고, 현재 저작권자 회사 측에서 별다른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사례 3. 소규모 종교 단체에 폰트 파일 제작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

소규모 비영리 종교 단체에 폰트 저작권자 회사가 2023년 9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이다. 저작권자 회사는 37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사소송의 피고는 2019년 폰트가 사용된 안내문에 담당자로 기재되어 있던 목사인데, 실제 사안의 안내문을 제작, 게시한 담당자는 아니다. 저작권자 회사는 피고 목사가 자신들 홈페이지에 가입한 기록이 없으므로 폰트 파일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았을 것이라는 점도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액인 370만원은 자신들이 판매 중인 폰트 라이선스 1년 사용 상품의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① 피고가 폰트 파일을 이용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의 폰트 파일 이용 사실 증명 책임은 원고인 저작권 회사에 있다는 점, ② 만약 이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폰트 파일을

스스로 다운로드/설치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위반이 아니며, ③ 원고 회사 홈페이지에 피고의 회원가입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가 원고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피고가 스스로 이 사건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 및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며 피고의 폰트 파일 설치 사실 입증 책임은 원고인 저작권 회사에 있다는 점, ④ 피고 및 이 사건 종교 단체는 서체 사용으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며, 원고 회사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 아닌 실제 발생한 구체적 피해 금액을 증명해야 하고, ⑤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소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현재 소가 계속중에 있다.